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1. 계약자 및 표준약관

1. 이용자, 시설 및 대리인(보호자)은 방문요양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방문요양)’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급여제공계약(표준약관)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부본 발급 확인서에 발부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여 발급 증빙자료로 관리한다.

2.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계약기간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5등급자를 장기요양인증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등급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준용하여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에 따른 이용료로 산정한다.
2. 비급여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비급여항목으로 비용을 정한다.

5. 이용자의 권리

-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②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③ 이용자의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 ④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 ⑤ 본 기관에서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 ⑥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이용자의 건강이상과 신병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통보받을 권리
- ③ 이용자의 급여제공 내용과 변경내용을 통보받을 권리
- ④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요구하거나 받을 권리
- ⑤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⑥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 및 해지, 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⑦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7. 이용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8.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의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9. 계약해지 요건

-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시설에서 임의 변경한 경우

2.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때
- ②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의 자격을 상실한 때
-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중한 경우로 판정될 때
- ④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